

# 예 산 총 칙

201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40,300,000	31,209,000
일반회계	862,600,000	25,878,000
특별회계	177,700,000	5,331,000
공기업특별회계	110,300,000	3,309,000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63,500,000	1,905,000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46,800,000	1,404,000
기타특별회계	67,400,000	2,022,000
주택사업특별회계	610,000	18,300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10,300,000	309,00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300,000	39,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400,000	162,000
치수사업특별회계	2,000,000	60,000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100,000	33,000
청소사업특별회계	44,400,000	1,332,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000,000	6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90,000	8,7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510,614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다음 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료, 법정보상금
4. 지방채 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 지출경비
5. 재해 대책비
6. 반환금
7. 선거관련 경비